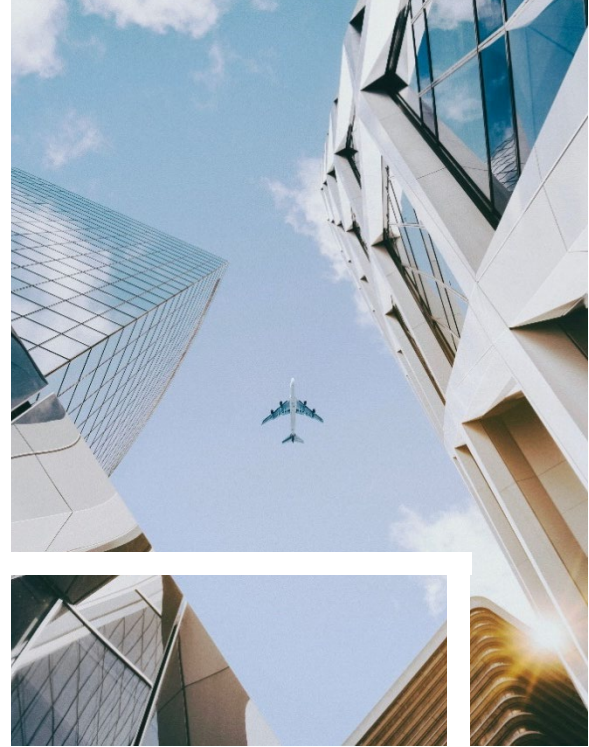


Samil Global Tax Update

October 2021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OECD	디지털세 Pillar1 및 Pillar2 최종 합의문 공개
인도	간접양도 과세 소급적용 취소
멕시코	인력 하도급 규제 관련 세제개편 발효
인도네시아	VAT세율인상, 법인세율 인하 취소, 탄소세 도입
말레이시아	세제 혜택 개정 사항



삼일회계법인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OECD

136개국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공개

OECD는 2021년 10월 8일, 회원국 140개국 중 136개국 (나이지리아,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4개국 제외)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Pillar1 및 Pillar2 관련 최종 합의문을 공개하였음

합의된 Pillar1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이 200억유로 이상이면서 이익률이 10%가 넘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 배분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소득을 각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 배분하도록 함

합의된 Pillar2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인 기업은 15%의 글로벌 최저 유효 법인세율(ETR)을 기준으로, 각 자회사 소재국가별 합산 유효세율이 15%에 미달 시 모회사에서 차액분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각 Pillar 별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Pillar1 관련 주요 합의 사항

- Pillar1 적용 대상 기업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확정됨(광산업, 일부 금융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시행 7년 후 100억유로로 낮춰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할 계획
- 초과이익을 배분 받을 시장소재지국을 판단하는 과세 연계점은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를 적용하되,

GDP가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유로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낮춰 개발도산국과 후진국이 보다 더 많은 과세권을 부여하도록 함

-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결정됨. 시장 소재지국들에 배분될 과세권 총량 산출 공식도 확정됨
- 초과이익은 재화나 용역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최종 시장 관할구역에 배분될 것이나, 일부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최종 시장에 대한 정의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
- Amount A와 관련된 분쟁(예, 이전가격, 사업의 이익 분쟁)에서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특례 대상 적용 여부는 주기적 재심사 진행
-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전 각 국가에서 도입한 디지털세(DST 등)는 Pillar1 도입 시 폐지, 신규 도입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합의

• Pillar2 관련 주요 합의 사항

- 적용 대상 기업은 연결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확정되었음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실질활동지표 차감 비율도 확정. 시행 첫해의 경우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동 공제비율은 시행 후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이후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하여 최종적으로는 양 지표 공히

5%를 과세표준에 공제하도록 함. 단, 급여 및 유형자산의 정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 특정 관할국에서 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 및 이익 1백만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당 관할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됨. 또한, 국제해운소득을 Pillar 2 적용대상에서 제외
- 15% 세부담을 판단 시 포함되는 대상조세(Covered Taxes)에 각 국의 CFC 규정(한국의 경우 국조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규정) 적용에 따른 납부세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Pillar 2가 CFC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있는 다국적기업그룹(5천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 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에는 5년간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 원천지국 과세규칙 적용 대상 세율이 확정됨.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9% 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 시 양자 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하기로 함.
- 비용공제부인규칙 시행시점은 1년 유예되어 2024년부터 발효 예정

• **향후 도입 일정**

- 금번 합의안은 G20 정상회의 (10월30일, 31일)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원만히 추진되는 경우, 2022년에

기술적 세부사항까지 논의 및 확정 되어 법적 효력이 있는 ①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②모델규정으로 구현될 예정임

- 2022년 중 각 국가별 입법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 계획

• **PwC Observations**

- 최종 합의문에 시행 계획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2023년 Pillar 1·2 시행을 위한 향후 잔여 작업방식 및 시한을 확정하였음
- 규모 요건 감안 시 Pillar 1의 경우 소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Pillar2의 경우 다수의 한국 기업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Pillar 1·2 적용이 예상되는 기업은, 2023년 시행에 대비하여 Pillar 1·2로 인한 추가 세유출 발생 가능성 및 수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선제적인 지배구조/ 거래구조 개편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인도

간접양도 과세 소급적용 취소

- 인도는 2012년 외국법인의 지분양도에 따라 인도 소재 자산(예: 직접 양도 대상 외국법인이 인도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자회사 가치 비중이 전체 양도가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 간접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도 소재 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인도 내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2012년에 입법함 (the Finance Act, 2012).

- 해당 규정 도입 시 1962년 4월1일부터 발생한 간접양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여, 다수의 소급과세 및 이로 인한 과세 분쟁과 행정 소송이 발생
- 인도 정부는 2021년 8월 13일 세법 개정을 통해, 최초 간접양도과세 규정 입법인인 2012년 5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간접양도 거래와 관련된 과세 소급적용을 취소함

• **PwC Observations**

- 2012년 5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간접양도로 인해 인도 내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된 기업들은 과거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을 고려

멕시코

인력 하도급 규제 관련 세제개편 발효

- 멕시코 국회는 2021년 4월 인력 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한 노동법 및 세법 개정을 규제안을 통과하였음
- 이중 개정세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발효됨.
- 관련 노동법 개편에 따라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파견근무)는 금지되었으며, 기업의 목적이나 주된 경제 활동에 속하지 않는 전문 서비스 및 업무 등 특정 업무에 한해 하도급 계약을 허용
- 2021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개정세법에 따르면 노동법 상 허용되지 않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법인세 목적으로 비용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함

• **PwC Observations**

- 멕시코 노동법 상 허용되지 않는 인력 하청업체를 활용하는 시, 법인세 비용 불공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 하도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한국 기업 중 멕시코 제조업 진출 시 사업수행 법인과 인력운영 법인을 분리 운영한 법인의 경우 두 법인간 합병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 등 인력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한편, Employee Profit Sharing 등 구조조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각도에 걸친 검토가 요구됨

인도네시아

2021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표준 VAT 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하 취소, 탄소세 도입 등이 담긴 법안을 승인함

• **VAT 세율 인상**

- 2022년 4월부터 표준 VAT 세율을 기존 10%에서 11%로 인상하고, 2025년부터는 1% 추가로 인상하여 12% 세율을 적용

• **법인세율 인하 취소**

-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법인세율 인하(기존 22%에서 20%)를 취소함

● 탄소세 도입

-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상품 및 활동에 대해 이산화탄소 등가물 단위 kg 당 시장가격(하위값 kg 당 30루피아) 상당의 탄소세를 부과할 것임
-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하위값 (kg 당 30루피아) 에 해당하는 탄소세 납부 필요

● PwC Observations

- 인도네시아 VAT 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하 취소, 탄소세 도입 등으로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특히, 탄소세 도입으로 특히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운송 업계 회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4차 산업 및 디지털화 기술 관련 회사와 의약품(백신 포함) 제조업체를 위한 세제 혜택을 발표함.

● 4차 산업 및 디지털화 기술 보유 회사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인프라, 연구 및 디자인 개발 활동, 의료기기 시험실 및 임상시험실 및 그 외 재무장관이 지정하는 서비스 관련 회사들이 대상임.
- 신설 회사의 경우 0~10%, 기존 회사의 경우 10%의 우대세율을 최대 10년 간 적용함.
- 관련 기술 시설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등의

활동만 하고 기존에 서비스 운영을 한 적이 없는 경우 '신설 회사'로 분류됨.

- 기존 사업 활동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 부문을 신설하는 외국 또는 현지 소유 회사의 경우 '기존 회사'로 분류됨.
- 4차 산업 또는 디지털화 기술 도입, 말레이시아 학부 졸업생 대상 취업 및 인턴쉽 기회 제공, 기술 이전, 현지 기관 및 대학교와 협업 등의 이행 조건 존재함.
- 해당 회사의 주요 직책을 맡는 말레이시아의 거주자는 개인소득세 과세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 간 15% 단일소득세(일반적으로는 0% ~30% 누진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의약품 제조업체

- 첫 10년 동안 0~10%의 우대세율 적용, 이후 10년 동안은 10% 세율 적용함.
-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제 개발과 완제품공정을 제외한 제조 활동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 날짜로부터 1년 이내 첫 설비투자를 하여야 하고, 현지 대학교 재학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외 총 10가지의 이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PwC Observations

- 말레이시아에 신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4차 산업 및 디지털화 기술 관련 회사와 의약품 (백신 포함) 제조업 기업은 말레이시아에서 신설된 세제혜택 적용 가능성 및 공제 효과를 검토 필요

Global Tax Services 본부

이중현, Partner
02 709 0598
alex.lee@pwc.com

김주덕, Partner
02 709 0707
michael.kim@pwc.com

김찬규, Partner
02 709 6415
chan-kyu.kim@pwc.com

김홍현, Partner
02 709 3320
hong-hyeon.kim@pwc.com

박인대, Partner
02 3781 3268
in-dae.park@pwc.com

소주현, Partner
02 709 8248
so.juhyun@pwc.com

이경민, Partner
02 3781 1550
kyungminlee@pwc.com

이동열, Partner
02 3781 9812
dong-youl.lee@pwc.com

이윤석, Partner
02 3781 2374
yoon-sok.lee@pwc.com

전원엽, Partner
02 3781 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Partner
02 709 8895
junghwan.cho@pwc.com

Global Tax Update에 소개된 주제 중 주요 주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삼일 공식 YouTube 채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Global Tax Services 본부는 국제조세전문 컨설팅 조직으로서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이 해외신규투자/인수합병/운영/철수 시 직면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